

수원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17191 판결 [건물점유회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171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합5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3. 19.

판결 선고 2020. 4.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합5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인도 집행 당시의 상태로

위 건물을 복구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

별지